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81호
2025. 7. 28.(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규 칙]

제4715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4716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
제4717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
제4718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10
제4719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2
제4720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4
제4721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1
제4722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7
제472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3
제4724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2
제4725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46
제4726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8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715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 교통실 표 버스정책과란 다음에 택시정책과기후환경본부(대기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택시정책과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1. 이륜자동차검사(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51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구청장
	2.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변경신고처리 및 휴업·폐업 신고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3제1항부터 제3항, 제8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구청장
	2-2.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업무정지명령, 취소 또는 정지처분 현황의 기록·관리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3),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4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구청장

별표의 □ 교통실 표 중 택시정책과 제13호란부터 제1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구청장
13-2. 자동차종합검사(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구청장
13-3. 내압용기 검사 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4제3항)	구청장
14.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변경신고의 처리, 휴업·폐업 신고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제2항, 제8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구청장
14-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지정 받은 사항 변경, 변경신고처리, 휴업·폐업 신고 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의2)	구청장
15.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이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업무정지명령, 취소 또는 정지 처분현황의 기록·관리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제1항,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의3)	구청장
16.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이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 명령, 검사기술인력 현황의 관리	○ 「자동차관리법」 제46조제2항,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구청장

별표의 □ 교통실 표 중 택시정책과 제2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직무정지명령, 기술인력 현황의 관리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5제2항,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4)	구청장
---	--	-----

별표의 □ 기후환경본부 표 중 기후환경정책과 제1호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후환경정책과	1.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다음의 사무 나. 분할납부의 통지 및 일시 정수의 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8조제1항제3호	구청장
---------	--	---------------------------------	-----

별표의 □ 기후환경본부 표 중 대기정책과 제5호란 및 제6호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 등을 사무위임 규칙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륜자동차검사 관련 사무’ 신설에 따른 자치구 재위임
-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사무 구체화
- 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사무’ 법령 및 근거조항 현행화

◆ 서울특별시규칙 제4716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한다.)”를 각각 “한다)”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란 중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을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확인사항을 삭제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보상 중 장제·유족보상 청구 시 담당공무원은 ‘인감증명서’ 확인이 필요하나,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4717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하며, 소장은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 소지자를 해당 체육시설에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가.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 시 관람권 발행에 대한 현행 검인 규정은 전산 발행 관람권이 주류인 현실을 반영하여 개선 필요
- 나. 관람권을 전산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 확인 등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 개선

2. 주요내용

- 가.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자는 관람권 발행 시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전산 발행한 관람권에 대해서는 관람권 검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신설(제6조제1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4718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28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건강총괄관의 근무 형태) 서울건강총괄관은 비상근으로 하며, 주당 2일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① 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건강총괄관 운영 세부 기준 등 조례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서울건강총괄관은 비상근으로 하며, 주당 2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제2조)

다. 서울건강총괄관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수당 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제3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719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정보 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호 중 “상용소프트웨어”를 “상용 소프트웨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제1항제2호 중 “정보시스템간”을 “정보시스템 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달성하고자하는”을 “달성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예산이 소요되는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로 한다.

1.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다만, 하드웨어 등 단순 구매·설치 사업은 제외)
2.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재개발을 포함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타당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사업”을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으로, “요청하여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타당성 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제안요청서 기술검토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화사업에 따라 규칙의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제3조제4호)

나. 심사제도 간 중복을 해소하고, 예산타당성 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사 대상을 정비함(제6조제1항)

다. 제안요청서 검토 절차의 내용 중복과 조기 발주 지연 등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술검토 절차를 의무 준수에서 '필요시 준수'로 변경함(제10조제2·3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4720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추천 받거나”를 “추천받거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타당성을”을 “타당성에 대한”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통해 평가하여 최종승인을 결정한다”를 “거쳐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승인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평가기준”을 “평가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건부 승인결정”을 “조건부승인 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건부 승인작품의 경우”를 “조건부 승인 작품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동일작가의 채십이상”을 “동일 건축 물에서 동일 작가가 두 번 이상 심사받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조치여부”를 “조치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설치여부”를 “설치 여부”로 한다.

④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한 후 조례 제23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서(작품 대금 지급 확인 서류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제11조제5항 관련)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

(앞 쪽)

관리번호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건축물	위치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규모	지하 층/지상 층, 연면적 : m ²	용도	
	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설치형태	총설치수 점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설치금액	원
	심의일자	설치일자		

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

연번	세부위치	작품명	작가명	연락처	비고

(뒤 쪽)

작	품	내	용	(정면사진)
작 품 명				
작 품 종 류 (분 류)				
규 격				
재 료				
금 액	원			
<사진촬영 시 유의사항> ※ 정면, 원경, 근경, 좌측면, 우측면, 후면, 작품 설명판 사진을 모두 촬영하여 작성할 것 ※ 작품 설치 및 작품 주변의 정리정돈(공사 등)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작성할 것				
(원경사진)				(근경사진)
(좌측면 사진)				(우측면 사진)

(뒤 쪽)

(후면 사진)

(작품설명판 사진)

(기타 특징부 또는 작품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진 추가)

[별지 제19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서(제11조제4항 관련)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공공기관 []민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건축물	건축구분 []신축 []증축	주 소	
	건축허가일자	최종설계변경일자	
개요	건축물명	용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해당시설 중 선택)	설치대상 연면적
미술작품개요	작품명	작가명	
	작가 연락처(휴대전화)	작품종류	
	작품재료	작품규격	
	설치위치(건물 위치 내 상세위치 명기)	작품가액	
	심의일자	설치완료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 완료 확인을 신청합니다.

- 붙임 : 1. 미술작품 설치완료 사진(정면, 원경, 근경, 후면, 좌측면, 우측면 사진 및 작품 설명판 포함) 1부.
 2. 작품 대금 지급 완료 증명 각 1부.
 [거래 양당사자(건축주 및 작가)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은행입금확인서]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또는 해당 자치구)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 관련 대금지급 여부 확인 및 행정처리

2. 수집 항목

-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등 통장사본에 포함된 개인정보

3.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30년) 동안 보유

※ 본 개인정보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절차의 필수요건인 작품 대금 지급 확인을 위해 수집·이용됩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설치확인 절차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구청장 귀하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가. 기존에 운영 중이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 신청 절차를 시행규칙상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
- 나. 미술작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작품 가액의 지급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서식 변경

2. 주요내용

설치 완료 확인 신청을 위한 서식 신설(제11조 및 별지 제19호서식)

◆ **서울특별시규칙 제4721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규칙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6조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별표1의2에서 정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중앙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1”을 각각 “별표 1”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를 “경우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무부서(제5조 관련)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본부·국(통제관)	과(담당관)
1	자연 재난	풍수해(태풍·호우)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2		지진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3		대형화산폭발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4		가뭄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5		산사태·급경사지	정원도시국	산지방재과
6		낙뢰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7		한파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8		폭염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9		풍수해(대설)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10		대규모 황사 발생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11		조류 대발생(녹조)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2	사회 재난	산불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13		화학물질 유출사고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4		대규모 수질오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5		공동구 사고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16		댐붕괴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17		도시철도 대형사고	교통실	도시철도과
18		고속철도 대형사고	교통실	도시철도과
19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1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
22		가축질병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23		감염병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4		정보통신 사고	디지털도시국	정보통신과
25		전력분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6		원유수급분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 · 본부 · 국(통제관)	과(담당관)
27		보건의료 마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8		식 · 용수 사고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
29		육상화물운송 마비	교통실	물류정책과
30		공연 · 행사장 안전사고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31		초미세먼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32		도로터널 사고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33		도시가스 수급분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34		한강수난사고	미래한강본부	한강여가사업부
35		위험물 사고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36		어린이집 재난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
37		연구실 재난	경제실	첨단산업과
38		승강기 재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39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40		야영장 재난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41		테마파크시설 재난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42		농축산물시설 재난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
43		석유시설 재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44		대규모점포 재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45		제품 재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46		노인복지시설 재난	복지실	어르신복지과
47		아동복지시설 재난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48		장애인복지시설 재난	여성가족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49		의료기관 재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5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재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51		항공기 재난	교통실	교통정책과
52		공항 재난	교통실	교통정책과
53		물류시설업 등록시설 재난	교통실	물류정책과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 · 본부 · 국(통제관)	과(담당관)
54		수산물시설 재난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
55		전통시장 재난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
56		청소년복지시설 재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57		청소년수련시설 재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58		사방시설 재난	정원도시국	산지방재과
59		체육시설 재난 (공공시설의 경우 시립체육시설)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60	사회 재난	산업시설생산 마비	경제실	산업입지과
61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62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63		소각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64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마비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65		버스 총파업	교통실	버스정책과
66		택시 총파업	교통실	택시정책과
67		지하철 파업	교통실	도시철도과
68		도로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시설국)
69		지하철 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도시철도국)
70		물재생센터 마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71		지반침하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72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73		한강교량 대형사고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
74		병원시설 대형사고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
75		대형 상수도 누수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76		상수도공사장 붕괴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77		대테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 · 본부 · 국(통제관)	과(담당관)
78		아파트공사장 붕괴	주택실	주거정비과
79		시청사 마비	행정국	총무과
80		열공급 중단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81		다중운집 인파사고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 소방재난본부가 수습주무부서인 재난의 경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
 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에는 해당 재난 발생 시설 등과 관련된 실 · 본부 · 국에서 통제관,
 담당관(상황총괄반 실무반장) 역할 수행 가능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사회재난 유형신설에 따른 재난수습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사회재난 유형을 반영하여 재난수습주무부서 정비(별표 2)

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11조, 19조, 23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722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결정된”을 “결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3조 및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입주자의 소득요건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소득 기준”을 “입주자격(소득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퍼센트 이하(다만, ”을 “105퍼센트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다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으로, “공급)”을 “공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20퍼센트 이하”를 “150퍼센트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하”를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를 “입주 전까지”로, “별도”를 “시장은 별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별표 2”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영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을 “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갱신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할증)” 을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할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소득기준” 을 “제3조제1항의 소득기준” 으로, “아래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정도” 를 “아래 표에서 정한 소득기준 초과비율” 로 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20퍼센트의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장기전세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한 자녀가 있는 입주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할증을 적용하지 않으며, 최장 거주기간 내에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자산기준 중 자동차기준 초과 시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경우 최장 거주기간을 20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 을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모집공고시 저층(1~2층)” 을 “모집공고시 저층(1~3층)”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을 “법 제49조의3”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이내” 를 “이내에” 로, “그 후에 발생하는 공가의” 를 “모집공고일부터 1년 초과 후 재공급하는” 으로, “범위 내” 를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차임 등” 을 “법 제49조의 임대료” 로 한다.

제13조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를 “영 제57조” 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을 “법 제49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를 “규칙 제30조”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을 “법 제4조제1항” 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 라 한다)” 를 “공공주택사업자” 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전세주택의 임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장기전세주택을 최초로 공급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2]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및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제3조제3항 관련)

1. 입주자 선정순위(건설형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구 분	내 용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일반공급·우선공급 가점기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가. 공급신청자의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성년 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나. 공급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다. 공급신청자의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라. 공급신청자의 부양가족 수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마. 공급신청자의 청약저축 납입 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바. 공급신청자의 청약예금 가입 기간	8년 이상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

※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성년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라’의 부양가족 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하며, 태아를 포함함.

※ ‘마’의 가점은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제외

※ ‘바’의 가점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제외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기준을 적용하고, 무주택기간 산정 시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한다.

3. 감점 산정기준(당첨자 발표일 기준)

감점 기준	감점 점수
가. 최근 3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나. 최근 5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4점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2점

4. 상기 제2호 및 제3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에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선정기준 및 임대조건을 개선하여 장기전세주택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혼인 사실 증명 기한 개선(제3조제2항)
- 나.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 기준 개선(제5조제2항 및 제3항)
- 다. 장기전세주택 최장 거주기간 신설(제7조제1항)
- 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신설 및 가점·감점기준 개선(별표 2)

◆ 서울특별시규칙 제472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2제2항 및 조례”를 “제11조의2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제출”을 “첨부하여 제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계획”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변경) 신청서”를 “(변경)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입안제안”을 “입안 제안”으로 한다.

제5조 중 “영 제21조제3호”를 “영 제2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을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으로 한다.

제14조 중 “영 제59조제2항제2호”를 “영 제59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23조 중 “법 제16조”를 “법 제31조”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추진위원회와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조합”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재개발구역의 건축물”을 “재개발구역의 건축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상환일, 상환일 전일”을 “상환일 및 상환일 전날”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정비사업비”를 “정비사업비의”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통보 받거나” 를 “통보받거나” 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공급기획관” 을 “건축기획관” 으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인 2025년 6월 4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행일) 이후로 제출된 별지 제1호의6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인 2025년 6월 4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행일) 이후로 제출된 별지 제7호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용자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제26조 관련)

용자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용자의 점수 (10점)	추진위원회 승 인	1	60% 이상	10
		2	60% 미만	8
	조 합 설 립	1	80% 이상	10
		2	80% 미만	8
건립예정 주택 중 소형평형비율 (10점)		1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45% 이상	10
		2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45% 미만	8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등 포함) 부담률 (10점)		1	20% 이상	10
		2	10% 이상	8
		3	10% 미만	6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10점)		1	충족도 50% 미만	10
		2	충족도 50 ~ 70% 미만	8
		3	충족도 70% 이상	6
사업추진단계 (10점)		1	추진위원회	10
		2	조합설립인가 후	8
		3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6
용자지원여부 (10점)		1	용자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	10
		2	용자대상자로 결정되어 용자금을 받은 경우	8
공공지원 규정 적용여부 (10점)		1	예산·회계규정	4
		2	행정업무규정	3
		3	선거관리규정	3
정성평가(30점)		용자금 지원 여부를 위한 적정성 검토 등		30

[별지 제1호의6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00동 00번지 일대 제 00 호
번호부여일자	20 . . .
확인(인)	

1. 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 (㎡)
		(계 필지)	(계)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

※ 주의사항

- ①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 ②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구역개요

위 치 (요청 구역)	00동 00번지 일대	구역면적	(㎡)
----------------	-------------	------	-----

3. 동의내용

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를 확인하였으며,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함

나.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습니다.

1. 아래의 동의여부 표기 시 각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

※ ①과 ②는 둘 중에 한 곳에만 동의여부를 표기하여야 함

의제사항		자필로 동의 기재 〈①, ② 중 한 곳만 표기〉
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서명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의제됨	동의
② 조합직접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 조합직접설립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 하고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창립총회 준비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됨 ※ 구역지정 전에 조합직접설립에 대해 과반수 동의 미충족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여 추진하거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조합직접설립에 과반수 동의가 확인(충족)될 경우 조합직접설립으로 추진 가능 ※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별도 징구함	동의

2. 본 동의서의 효력은 각 동의의 **관련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사항

※ (예시) 입안 요청 동의서 제출 후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 전 철회한 경우, 입안 요청에 대한 동의까지는 인정됨

3.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 및 반대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는 사항

-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意的 상대방 및 구청장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청장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意的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동意的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意的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구청장이 동意的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함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자필로 동의를 기재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서명* (지장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서명)하고,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

[별지 제7호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유 권 현 황 ※ 재개발 사업 대상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건 축 물	()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소유 권 현 황 ※ 재건축 사업 대상	소유권 위치 (주소)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	
동 의 내 용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습 니다. 1. 아래의 동의여부 표기 시 각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 ※ ①과 ②는 둘 중에 한 곳에만 동의여부를 표기하여야 함				
	의제사항				자필로 동의 기재 〈①, ② 중 한 곳만 표기〉
	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서명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의제됨			<i>동의</i>
	② 조합직접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조합직접설립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 하고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창립총회 준비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됨 ※구역지정 전에 조합직접설립에 대해 과반수 동의 미충족할			<i>동의</i>

의제사항	자필로 동의 기재 〈①, ② 중 한 곳만 표기〉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여 추진하거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조합직접설립에 과반수 동의가 확인(총족)될 경우 조합직접설립으로 추진 가능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별도 징구함	

2. 본 동의서의 효력은 각 동의의 **관련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사항

※ (예시) 입안 제안 동의서 제출 후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 전 철회한 경우, 입안 제안에 대한 동의까지는 인정됨

3.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의 철회 및 반대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는 사항

－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구청장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청장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구청장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함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자필로 동의를 기재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토지등소유자(성 명) :
(지장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다만, 법인이나 장기간 국외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할 수 있음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

[별지 제39호서식]

정비사업 용자금신청서

신청인	조합 (추진위원회)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구역 (법 제31조제2항제2호 “가-라” 목의 지역 포함)	구역명칭			구역면적	m ²
	위치				
신청금액			금 원정(W)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정비사업 용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또는 조합설립인가서 사본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7호에 따른 신청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함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자신청 대상자 등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용자 결정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부담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의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자신청대상자를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및 인가를 받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으로 정함(제23조)
- 나. 용자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 내 “정비기반시설 부담률”을 15%에서 10%로 조정하고 “사업추진단계”에 정비구역 지정 전 승인받은 추진위원회를 포함(별표 1)
- 다. 입안요청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대한 특례 조건을 명기함(별지 제1호의 6서식)
- 라. 입안제안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대한 특례 조건을 명기함(별지 제7호서식)
- 마. 사업구역에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지역을 명기함(별지 제39호서식)

◆ 서울특별시규칙 제4724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외관(보조대상) :” 을 “외관(보조대상):”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내부(용자대상) :” 을 “내부(용자대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 받은” 을 “수탁받은” 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경우 :” 를 “경우:”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적합여부” 를 “적합 여부” 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우 :” 를 각각 “경우:” 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위탁 받은” 을 “수탁받은”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비용을 지원받고자” 를 “비용지원을 받고자”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신청 :” 을 각각 “신청:”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구청장” 을 각각 “시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을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상정” 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 “시장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시장” 을 “시장” 으로, “지원대상자에게” 를 “지원대상자 및 소관 자치구에” 로 한다.

제16조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 :” 를 각각 “경우:” 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15조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0호서식]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제15조제1항 관련)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						
한 옥 등록번호				등 록 일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대지면적	m ²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 무 소 주 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수선 등 구분	☐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m ²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수수료
	2. 한옥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한옥 수선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완료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불편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 시장이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지원 금액을 확정하도록 함
- 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정비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4725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물순환안전국장” 을 “물순환안전국장, 치수안전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를 “치수안전과장이 맡는다” 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제4조제1항” 을 “제5조제3항” 으로 한다.

제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서의 장” 을 “사무관” 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검토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검토수당: 1건당 10만원

나. 참석수당: 1건당 15만원(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교통비 등 여비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재해영향평가심의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전결규정 정합을 시행하고자 당연직(부위원장)위원을 신설하고,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실무지침 개정시행(2025. 5. 7.)에 따른 수당·여비를 변경하러 함

2. 주요내용

- 가. 당연직 위원(부위원장 : 치수안전과장) 추가(제3조)
- 나. 부서의장(치수안전과장)의 당연직 위원 위촉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 회의 간사를 “부서의 장” 에서 “사무관” 으로 변경(제7조)
- 다.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실무지침 개정시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 현행화 (“70,000원/회” 에서 “100,000원/건” 으로 변경 등)

◆ 서울특별시규칙 제4726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건축허가 호수를 적용하며, 건축허가 호수보다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을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를 적용하며,”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세대분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요금은 건축허가 호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실제” 를 “실제 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각의 별지 서식” 을 “별지 제24호의2서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신고률” 을 “신청율” 로, “신고서” 를 “신청서”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률” 을 “신청율” 로, “신고서” 를 “신청서” 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실제” 를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각의 별지 서식” 을 “별지 제24호의2서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신고률” 을 “신청율” 로, “신고서” 를 “신청서”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률” 을 “신청율” 로, “신고서” 를 “신청서” 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세대분할 신고서 (가정용, 주거·점포 겸용)						처리기간 7일
수도사용자등 정 보	고객번호		사용자명			
	주 소					
시설현황	①	☐ 가정용 (방수 : 총 개)				
	②	☐ 업종 겸용 (호수 : 총 개)				
① 거주세대 명 부 (가정용)	연번	세대주명		연번	세대주명	
	1			2		
	3			4		
	5			6		
	7			8		
② 거주세대 명 부 (주거·점포 겸용)	연번	호수	세대주명	연번	호수	세대주명
	1			2		
	3			4		
	5			6		
	7			8		
※ 담당공무원은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거주세대를 확인하여 적용 ※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을 확인하여 적용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이어서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이용기관 : 서울특별시 2. 이용목적 : 수도사용요금 세대분할신고(신규·변경)에 대한 처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해당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 안 함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오니 세대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또는 사용자)의 ※ 급수 인원 증감 및 방수(호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용받은 요금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귀하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 담당자
						(서명 또는 인)

(뒷면)

① 거주세대 명 부 (가정용)	연번	세대주명		연번	세대주명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거주세대 명 부 (주거점포겸용)	연번	호수	세대주명	연번	호수	세대주명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주 민 등 록 확 인

신고세대(세대)가 주민등록과 일치함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00구 00동장

직인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주택에 2세대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와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용도의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세대분할요금 적용은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2. 세대분할요금 적용 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세대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세대분할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따라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이 요금 적용기간 중 세대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나 수도사업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세대분할 신고서 (공동주택)						처리기간 7일
수도사용자등 정 보	고객번호		사용자명			
	주 소					
시설현황	주택구분 :					
	사실상 거주 세대수 : (건축허가 호수:)					
거주세대 명 부	연번	호수	세대주명	연번	호수	세대주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담당공무원은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거주세대를 확인하여 적용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을 확인하여 적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이용기관 : 서울특별시						
2. 이용목적 : 수도사용요금 세대분할신고(신규·변경)에 대한 처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해당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 안 함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오니 세대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또는 사용자)의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급수 인원 증감 및 방수(호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용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세대분할 신고서 (기숙사, 사회복지생활시설)						처리기간
						7일
수도사용자등 정 보	고객번호		사용자명			
	주 소					
시설현황	시설명 :					
	☐ 시설 전용 ☐ 다른 용도와 겸용					
	방수 또는 호수 : 총 개					
	현재 사용 인원 : 총 명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 건축물현황도					
※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사용량은 방수 또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 다만, 다른 용도 또는 업종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또는 호수당 월 5세제곱미터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한다.						
[개인정보 처리 고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수집 및 이용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2. 수집 및 이용목적 : 수도사용요금 세대분할신고(신규·변경)에 대한 처리						
3. 수집항목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4. 보유 및 이용기간 : 수도사용요금 세대분할 요금 적용 종료 후 5년까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오니 세대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 SMS 수신동의 관 계 : 대표자의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방수 또는 호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용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23호의2서식]

세대분할 신고서 (다중생활시설)				처리기간 2일
수도사용자등 정 보	고객번호		사용자명	
	주 소			
시설현황	시설명 :			
	☐ 전용급수설비 설치			
	☐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방수 또는 호수 : 총 개			
	현재 업종 : ☐ 가정용 ☐ 일반용			
변경 업종 : ☐ 가정용 ☐ 일반용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 건축물현황도			
※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다중생활시설은 가정용 업종을 적용한다. ※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다중생활시설의 사용량은 방수 또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 다만, 다른 용도 또는 업종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7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인정보 처리 고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수집 및 이용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2. 수집 및 이용목적 : 수도사용요금 세대분할신고(신규·변경)에 대한 처리 3. 수집항목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4. 보유 및 이용기간 : 수도사용요금 세대분할 요금 적용 종료 후 5년까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오니 세대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 SMS 수신동의 관 계 : 대표자의 ※ 방수 또는 호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용받은 요금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귀하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 담당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4호의2서식]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l21.seoul.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수도사용자등 정보		고객번호		사용자명	
		주 소			
감 면 신 청 정 보					
감면구분 (중복감면 적용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 대 주	성명		감 면 대 상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연락처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고지] - 수집 및 이용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 2 - 수집 및 이용목적: 요금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요금감면종료 후 5년			[민감정보 처리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요금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장애등록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 보유 및 이용기간: 요금감면종료 후 5년 - 위 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민감정보 처리 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개인정보·민감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제공목적: 요금 감면대상 자격 및 변동 확인 - 제공항목: 대상자·세대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장애등록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 제공기관의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요금감면종료시까지 - 위 개인정보·민감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요금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 - 이용기관: 서울특별시 - 이용목적: 요금 감면대상 자격정보 확인 - 공동이용 행정정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본인은 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 함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감면대상자와 관계 :) ○○ 수도사업소장 귀하					
※ 유의사항 1. 자격상실·전출 시에는 반드시 요금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 신청(변경, 해지)서		처리기간	
		즉 시	
구 분		☐ 신규 ☐ 변경 ☐ 해지	
수도사용자등 정 보	고 객 번 호		
	사 용 자		
	급수설비 소재지		
	전 화 번 호		
신청내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변경, 해지) 합니다.		
	고지 방법 (E-Mail은 문자 또는 알림톡과 중복 선택 가능)	☐ 문자(LMS) ☐ 알림톡 ☐ E-Mail	
	휴대전화번호		
	E-Mail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 - 수집항목 :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전자고지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자고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전자고지 확인] - 당월 8일 까지 “신청/변경/해지” 건은 당월 납기에 반영되고 당월 8일 후 “신청/변경/해지” 건은 다음 납기에 반영됩니다. - 향후, 이사등 전출 시 전입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고지가 직권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입력하신 생년월일(사업자번호)은 전자고지 수신 시 암호로 사용됩니다. 내용을 확인함 ☐	
신청인	성 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사용자의		
○○수도사업소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세대분할처리 기준을 사실상 거주세대수로 변경하여 실제 사용량에 따른 요금부과 및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함
- 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복지감면 적용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세대분할처리 기준을 사실상 거주세대수로 변경함(제25조제2항)
- 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적용량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함(제27조제1항)
- 다. 세대분할 신고서 명칭을 유형별로 정비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 확인하도록 함(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 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요금감면 신청 서식을 통합하고, 동 규칙 제27조제2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 등을 추가함(별지 제24호의2서식)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